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환경영향평가에의 참여 확대 등〉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78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환경영향평가에의 참여 확대	2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생략규정 삭제	10
※ 참고자료	14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14
2. 환경영향평가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비교	15

I. 제안경위

2025년 6월 25일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보의 투명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주민이 충분한 의견을 내기 어려운 만큼 주민참여의 기회나 대상을 확대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기후위기나 생물다양성 위기와 같은 각종 기후환경위기 속에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이 평가 대상 지역에만 한하는 문제나, 지역 사회의 환경 이슈로만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상 지역 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의견 수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 제25조, 제26조 등).

Ⅲ. 검토의견

1. 환경영향평가에의 참여 확대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설명회에서의 의견 제출, 공청회 개최요구 및 의견 재수렴 대상 등을 확대하고, 주민 의견누락에 대한 보완장치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 제25조 및 제26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 ----- ----- ----- ----- ~~-의견을-----~~ .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	제13조(<u>의견</u> 수렴) ① -----

현행	개정안
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단 신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 -----개최하여야 하며 이때 누구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초안에 대한-----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누락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수렴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국민이-----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② ----- ----- ----- ----- ----- ----- ----- -----등의-----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③ ----- ----- -----

현행	개정안
성하여 <u>주민 등의 의견을</u> 재수렴하여야 한다.	----- <u>의견을</u> ----- <u>하며 이때 누구든지 전략환경영</u> <u>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u> <u>출할 수 있다.</u>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u>주민 등이 의견의</u>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u>주민 등의 의견을</u> 재수렴하여야 한다.	② ----- ----- ----- ----- ----- <u>의견의</u> ----- ----- ----- <u>의견을</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u>주민 등의 의견</u>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u>주민 등의 의견을</u> 수렴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25조(<u>의견</u> 수렴) ① ----- ----- ----- ----- <u>의견을</u> ----- --- <u>하고, 이때 누구든지 환경영향</u> <u>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u> <u>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평가</u> <u>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누락하</u> <u>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의견수렴 보완방안을</u> <u>마련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u>주민 등의 의견</u>	② ----- ----- <u>의견</u> -----

현행	개정안
수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u>주민에 대한 공고</u>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 ----- <u>공고</u> ----- ----- ----- ----- ----- -----.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u>주민 등의 의견</u> 을 20일 이상 수립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u>주민 등의 의견</u> 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 ----- ----- ----- <u>의견</u> ----- ----- ----- ----- <u>의견</u> ----- -----.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u>주민 등의 의견</u> 수립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 ----- <u>의견</u> -----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6조(<u>주민 등의 의견</u> 재수립) ①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립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제26조(<u>의견</u> 재수립) ① ----- ----- ----- ----- -----

현행	개정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u>주민 등의 의견을</u> 재수렴하여야 한다.	----- ----- ----- ----- <u>의견을</u> ----- ----- <u>하며, 이때 누구든지</u> <u>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u> <u>견을 제출할 수 있다.</u>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u>주민 등이 의견의</u>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u>주민 등의 의견을</u> 재수렴하여야 한다.	② ----- ----- ----- ----- <u>의견의</u> ----- ----- ----- <u>의견을</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하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동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설명회·공청회 개최 등의 방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¹⁾²⁾³⁾.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현행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방법]

구분	평가서 초안의 공람	설명회	공청회
주체	전략행정기관의 장 환경시장·군수·구청장	전략행정기관의 장 환경사업자	전략행정기관의 장 환경사업자
대상	평가대상 지역 주민	평가대상 지역 주민 ※ 시·군·구별로 개최	평가대상 지역 주민
알림	일간·지역신문 공고 + 인터넷 게시	일간·지역신문 공고 + 인터넷 게시	일간·지역신문 공고 + 인터넷 게시
기간	전략 환경 20일 이상 40일 이내 20일 이상 60일 이내	초안의 공람기간 내	주민요구 시 ^{주1)}

주1) ① 주민 30명 이상 요구시, ② 주민 5명 이상이 요구하고, 그 수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만, 환경 피해의 광역성·누적성·잠복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피해의 영향권을 넓혀 인정할 필요가 있고, 정보의 전문성 측면에서 주민이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도 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됨.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3) <참고자료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충분한 의견을 내기 어려우므로 참여의 기회나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의견수렴의 대상 등을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던 내용을 삭제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누락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민주적 의사결정기능을 강화하고, 해당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현행법 제13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대상을 지역주민으로 규정하면서 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관계 전문가 등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주민의견이 희석되고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으며, 사업추진 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신중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음⁵⁾.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법에서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에

4)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자료집 (2024.11.26. 녹색연합 주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등 공동주최 토론회)
“거짓·부실 작성에도 공사는 강행...‘있으나 마나’ 환경영향평가 근본적 개선 시급”, 한국일보, 2025.07.09.

5) 이외에 한국주택협회는 지역주민의견이 희석되거나 미반영될 우려가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과정인데 의견 수렴 주체를 확대될 경우 사업 반대 단체들의 사업 저지를 위한 정치적 투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며, 과도한 행정력 소모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한국골재협회는 현행법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단계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법사례에서도 의견수렴 대상을 인근지역주민으로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서 전략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을 시행할 경우 관계 전문가 등 지역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므로⁶⁾, 의견수렴 범위 확대는 평가대상 사업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전 국민 의견수렴 일괄 확대는 직접적으로 환경적 피해를 받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타지역 의견이 상반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희석·과소평가되고 지역 간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환경영향평가 투명성 제고 및 주민 알권리 강화 측면에서 의견수렴 범위 및 절차 확대 등에 대해서는 필요 절차, 단계적 도입방안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생략규정 삭제

개정안은 현행법 제14조를 삭제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도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6)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현재 도시개발구역이나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등 개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사업 추진의 근거 법률에 따른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②「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함7).

7) 「도시개발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고 등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견수렴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⁸⁾⁹⁾.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14조를 삭제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도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강화와 충실한 의견수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른 법령에서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에 의견 수렴 절차를 중복해서 진행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 주민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⁰⁾¹¹⁾.

8)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자료집 (2024.11.26. 녹색연합 주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등 공동주최 토론회)

9) <참고자료 2. 환경영향평가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비교>

10) 참고로, 현행법 제25조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제12조 및 제13조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

문 의 처

02)6788-5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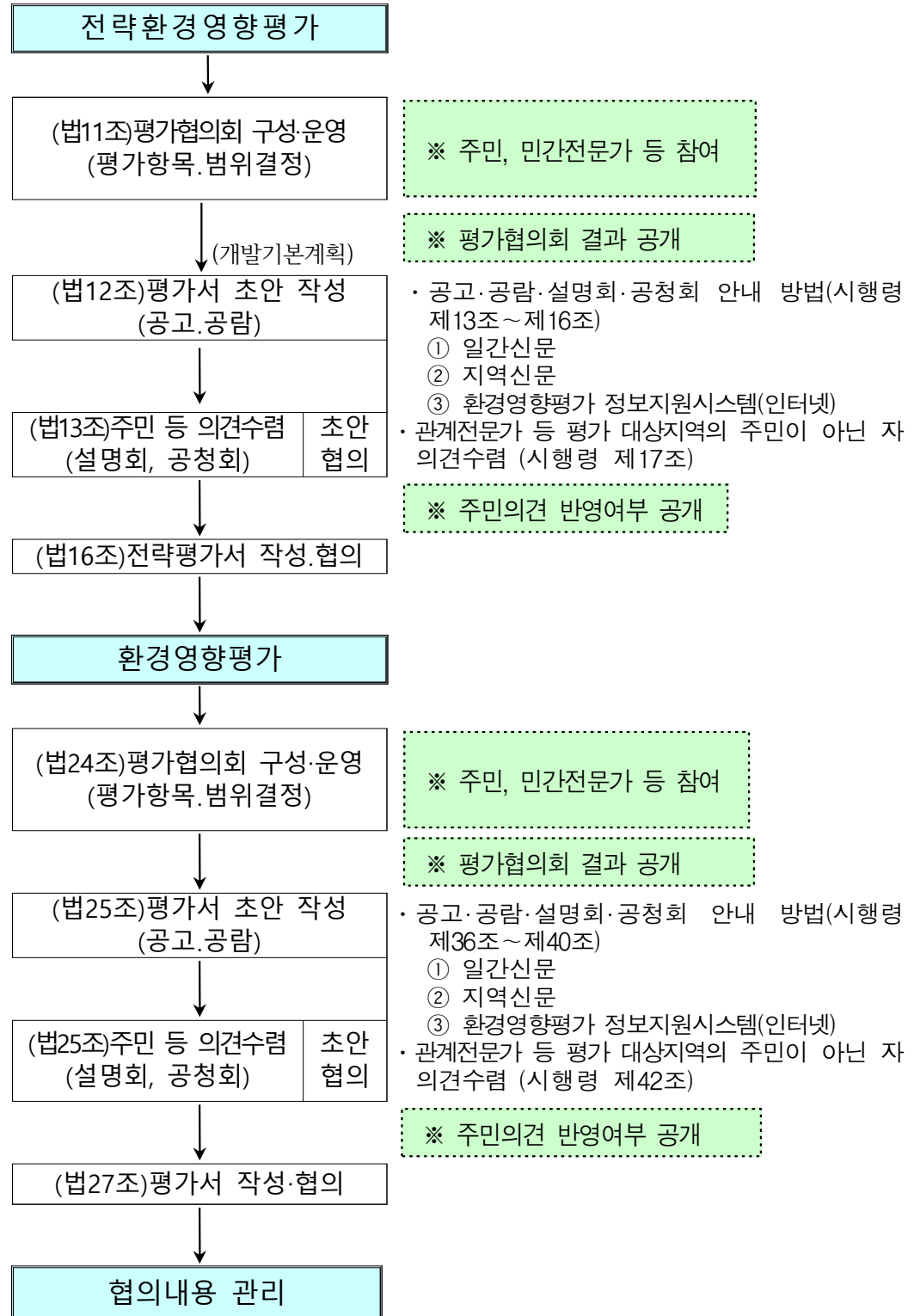
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 11) 이외에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법 제25조 등의 인용조문 정비와 개정안 시행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절차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2. 환경영향평가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비교

구분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대상 범위	평가대상지역 주민	행정구역		
공고 방법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 둘 이상의 일간지(일간신문, 지역신문) -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 지역신문 - 지정권자 인터넷 홈페이지	
공람 방법	-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평가서 초안 - 평가서 초안 비치	개발계획 관련 서류 사본 비치	해당계획 관련 서류 사본 비치	해당계획 주요 내용
공람 기간	20일 이상 40일 이내	14일 이상	14일 이상	14일 이상
형태	공람기간 중 설명회 개최	공람	공람	공람
공청회	30명 이상의 주민 요청 시 5명 이상의 주민이 요구하고 설명회에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과반 이상인 경우	면적 100만㎡ 이상인 개발계획	(관련규정없음)	(관련규정없음)
비고 (전평 대상)		25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군관리계획	산업단지 지정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